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59, 2216065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개요	1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
II . 검토의견: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4

I. 개 요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6. 1. 15.

(3) 회부일 : 2026.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의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공익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6. 1. 15.
- (3) 회부일 : 2026.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중대신고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건의 개정안(「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보호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공익신고의 처리 방향 2.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보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신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신 설>	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에 따른 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호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7(보호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2.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보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u>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u> <u>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5조(협조자 보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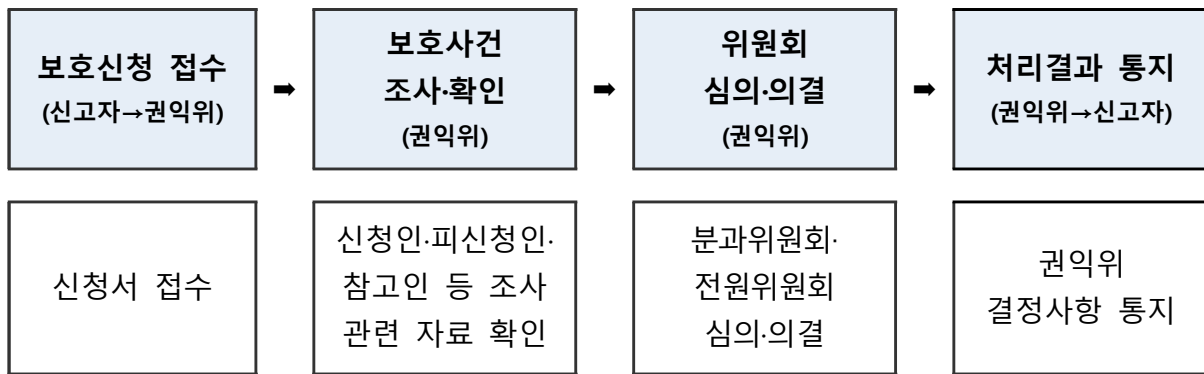
제62조, 제62조의2부터 <u>제62조의6까지</u> ,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 <u>제62조의7까지</u> ----- ----- -----.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u>제62조의6까지</u> ,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 ----- ----- <u>제62조의7까지</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생략)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69조에</u>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u>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u> 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u>제62조의7에</u> 따른 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69조----- ----- <u>보호심의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의의 업무</u> ----- ----- -----.

□ 현행법은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등 다양한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신고자 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신청인·피신청인 등에게 자료제출, 출석, 의견청취 등의 조사를 하고, 분과위원회¹⁾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²⁾ 인용·기각·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됨.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절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 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
 - 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런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³⁾. 2024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소극적이고 선택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⁴⁾,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2023년과 2024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이 각각 1건에 불과한 저조한 인용률을 지적한 바 있음⁵⁾.

- 관련하여,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중요 보호사건 민관심의위원회 신설’이 포함되었고, 권익위 2026년 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경비가 편성되었음.

<최근 3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2023	83	109	1	17	29	62
2024	119	128	1	22	21	84
2025	337	286	19	19	22	22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기간>

연도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전체	90일* 초과 사건	전체	90일 초과 사건
2023	109건	65건(59.63 %)	180.9일	280.3일
2024	128건	46건(35.94 %)	100.2일	223.9일
2025	286건	46건(16.08 %)	50.2일	208.3일

*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서울신문,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 442일째 결론 안 내 “방치” 지적도”, 2023.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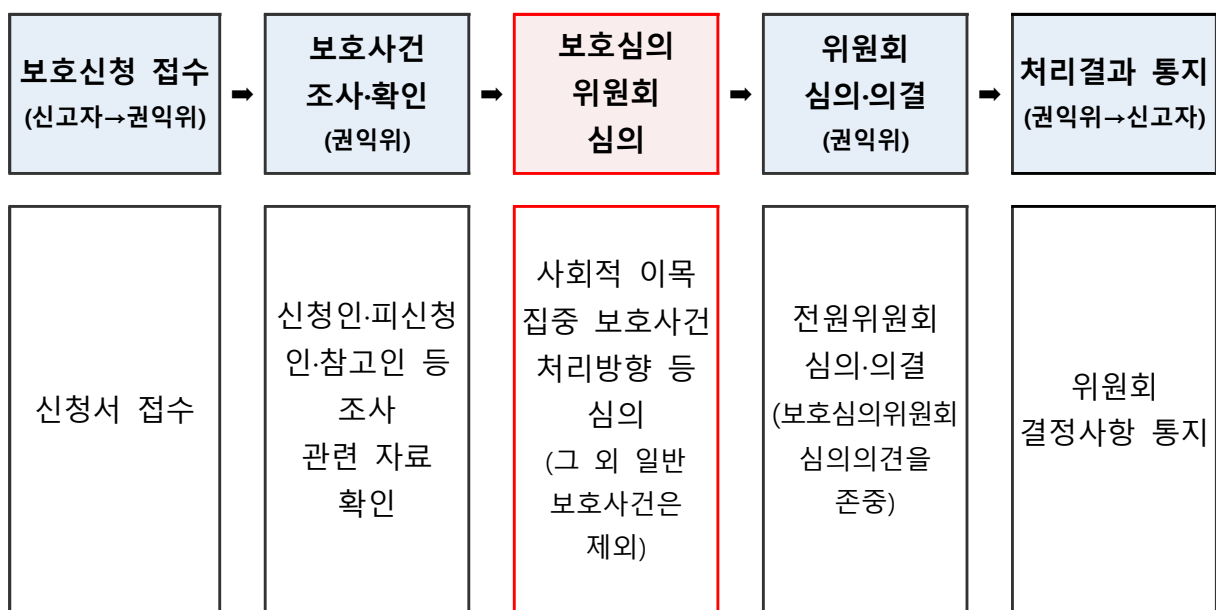
4) 국회 정무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p.97

5) 202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p.46

□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불이익 방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거침으로써 보호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절차(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시)>



※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개정안의 ‘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은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상심의

위원회'의 규정을 참조하되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이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상심의위원회와의 비교>

보상심의위원회	보호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u>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u>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u>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u>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62조의7(보호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u>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2.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u>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u>

<u>이 될 수 없다.</u>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보호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 반면, 보호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인 위원회로, 그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음. 그러나 심의기관인 위원회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⁶⁾, 보상심의위원회에 준하여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⁷⁾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⁸⁾으로 규정하여, 정당의 당원과

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289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추가하고 있음.

보호심의위원회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신고자 및 관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보호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보호 결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명칭과 기능이 거의 동일한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예)와 같이 설치 근거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시하고 타 법률에서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 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⑥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 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10) 현재도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분과위에서 심의·의결함.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3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

○ 둘째, 개정안은 보호심의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두면서 심의 대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우려가 있음.

유사 입법례¹¹⁾와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위원 일정 비율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판단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예시를 들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심의 절차 추가에 따른 보호의 적시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호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심의 이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

제3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부패방지 관련 의안의 사전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전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의 처리, 제6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부정청구등 신고의 처리 및 제재처분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제도개선 추진
2. 제2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사회·경제분야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검찰청법**」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 ⑥ (생략)

도록 운영될 수 있는데¹²⁾, 그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건의 회의 운영 절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보호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 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 심의사항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공익신고의 처리 방향’이라는 문언은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4조¹⁴⁾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보호심의위원회’도 대통령령에 규정함이 바람직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¹⁵⁾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 존속

12)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권익위의 분과위원회 역할을 수행함.

13) 권익위는 분과위를 생략하고 전원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14)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의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7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